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6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조례로 위임된 범위로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중복·재기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체육관 명칭 변경함.(안 제2조)

(현행) 실내체육관 ⇒ (변경) 거창군 체육관

나. 국민체육센터 탁구장 운영시간 변경함.(안 제6조)

(현행) 오전 10시~오후 12시 ⇒ (변경) 오전 10시~오후 10시

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규정 보완함.(안 제8조)

1) 체육시설 본연의 용도인 체육행사를 우선허가 하도록 정비

2)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우선순위 변경 가능 조항 신설

라. 정치나 종교의 목적으로 체육시설 사용 시 제한규정 신설함.(안 제9조)

마. 관람수입의 사용료 납입 규정 정비함.(안 제13조, 제14조)

관람료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법령 근거 없이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삭제함.

바. 사용료 감면조항 정비함.(안 제15조, 별표 2)

1) 법령 위임 없는 면제조항 삭제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2) 100분의 50 감면조항 신설 :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세대 내 18세 이하 자녀 등

사.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1)

수영장 강습회원 강습비, 볼링장 사물함 사용료 별도

아.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업무 위임규정 신설함.(안 제23조)

자. 그 밖에 법령 재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를 순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7. 30.~8.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함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제2조 다음의 제2장, 제6조 다음의 제3장, 제16조 다음의 제4장, 제22조 다음의 제5장, 제24조 다음의 제6장을 삭제한다.

제1조 중 “군”을 “거창군”으로 “관리 및 운영”을 “관리와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실내체육관”을 “거창군 체육관”으로 “부대시설”을 “부대 시설, 고제면 문화체육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입장의 거절·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염성 질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운영시간 및 휴무)”를 “(운영시간과 휴무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을 “개장·종료 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탁구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 포함)

다. 볼링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공휴일 포함)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둘 이상 함께 있는 경우”를 “2인 이상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행사”를 “행사나 경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나 행사
 4. 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육 활동이나 행사
 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관람 수입료 납입)** ①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중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의 20퍼센트(이하 “관람 수입료”라 한다)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만 납입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 수입료는 사용 종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정산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사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제목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을 “(사용료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체육시설 위탁·위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6조에 따른 그 소재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위임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기존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소재지 체육시설 관라운영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3조	체육시설 사업소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u>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군</u>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u>관리 및 운영</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u>실내체육관</u>, 국민체육센터, 사격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스포츠파크 일원의 시설과 그 <u>부대시설</u>을 말한다. 2.~9. (생략) 10.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나 <u>국제경기 또는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그 가맹경기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u>를 말한다. 11. “체육경기 외의 행사”란 제10호의 <u>체육경기를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공공행사나 공연·전람·전시 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모든 행사</u>를 말한다. 12. “공휴일”이란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u>」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3. (생략) 제2장 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u>군수</u>는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	<u>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u> <삭 제> 제1조(목적) ----<u>거창군</u>----- ----<u>관리와 운영</u>----- ----- ----- ----- 제2조(정의) ----- ----- 1.----- -----<u>거창군 체육관</u>----- ----- ----- ----- -----<u>부대시설, 고제면 문화체육회관</u>----- 2.~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시설의 개방) ① <u>거창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

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u>전염성 질병</u>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센터 가. 수영장: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탁구장, 볼링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공휴일 포함) <신 설> 2. 제1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 ②~③ (생 략)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u>행사</u>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입장의 거절·퇴장) ----- ----- ----- 1. -----<u>감염병</u> ----- 2. ----- ----- 3. ----- ----- 제6조(운영시간과 휴무일) ① ----- <u>개장·종료 시간</u>----- ----- 1. ----- 가. ----- ----- 나. 탁구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 포함) 다. 볼링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공휴일 포함) 2. ----- -----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u>2인 이상일 경우</u>----- ----- 1. ----- -----<u>행사나 경기</u>
---	--

2. <u>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u> 3. <u>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u> 4. <u>직장,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u> 5. <u>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u> 6. <u>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u> <신 설> <신 설>	2. <u>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 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나 행사</u> 3. ----- 4. <u>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u> 5. ----- 6. ----- 7. <u>그 밖에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신 설>	제9조(사용제한) ----- ----- ----- ----- 1. ----- 2. ----- 3. ----- 4. <u>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u>
제13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u>체육시설의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관람권(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한다. 이 경우 무료관람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것으로 본다.</u>	제13조(관람 수입료 납입) ① <u>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경우에는 총수입금 중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의 20퍼센트(이하 “관람 수입료”라 한다)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만 납입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 중 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총액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람수입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실시한다.

제14조(관람권의 검인 및 매표)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관람권에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② 제1항에 따른 관람 수입료는 사용 종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정산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다.

<삭 제>

제15조(사용료 감경)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 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③ 군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행순위자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⑤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의 경

우와 그린카드 이용자에게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5. (생략) ② 제13조에 따른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장 관리 및 운영 제18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거창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2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사용자의 책임) ① ----- ----- ----- ----- ----- <삭 제> <삭 제>
④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	② -----

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장 체육시설의 위탁

제23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

제2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체육시설 위탁·위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6조에 따른 그 소재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위임한다.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장 보칙 제25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제24조(시행규칙) -----필요한-----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체육시설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고
				평 일	공휴일	
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150,000	2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200,000	300,000	
	종합운동장 (트랙)			무료	무료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1일 1회 3시간 이내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다목적구장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100,000	150,000	
	씨름장 및 소규모공연장	체육경기		무료		
		소규모공연		무료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체육경기	1일 1회 8시간 이내	30,000	100,000	
		체육경기 외의 행사	“	50,000	120,000	
	골프연습장		월 사용료	70,000		
테니스장	회 원		월 사용료	7,000		
	비 회 원		일 사용료	4,000		
			월 사용료	20,000		
	게이트볼장			무 료		
	족구장			무 료		
	궁도장			무 료		
	농구장			무 료		
	인라인스케이트장			무 료		
	사격장			무 료		
	파크골프장			무 료		
	그라운드골프장			무 료		

※ 전기(조명포함) 사용료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납부

2. 국민체육센터

(단위: 원)

시 설 명	구 분		어린이·노인	청소년·군인	일반인	비 고
수영장	1회권	개 인	1,500	2,000	2,500	1회 2시간
		단 체	1,300	1,700	2,200	“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
		12회	16,000	21,000	27,000	“
	<u>수영 강습비</u>	<u>10,000원</u>				
탁구장	1회권	개 인	1,000	1,500	2,000	1회 1시간
	월사용	1개월	15,000	20,000	25,000	“
		12회	11,000	15,000	18,000	“
볼링장	1회권	개인	1,500	2,000	2,500	1회 1게임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1일 2시간
		12회	15,000	20,000	25,000	“
<u>볼링장 사물함</u>	<u>두칸</u>	1개월	<u>1,700</u>			
	<u>세칸</u>		<u>2,500</u>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기준(제15조제1항관련)

감경대상	감경률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 대회나 행사 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나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100분의 80
다음 각 호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u>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내 18세 이하 자녀</u> 7. <u>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u>	100분의 50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100분의 30
1.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u>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u> 2. 그린카드 이용자	100분의 10